

# 식품위생 행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문 주 석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사 약력

#### 1. 학 력

- |         |       |       |              |
|---------|-------|-------|--------------|
| 1981. 2 | 경상대학교 | 식품공학과 | 졸업(농학사)      |
| 1983. 2 | 고려대학교 | 식품공학과 | 대학원 졸업(농학석사) |
| 1994. 2 | 경상대학교 | 식품공학과 |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

#### 2. 경 력

- |                   |               |                  |
|-------------------|---------------|------------------|
| 1984. 7 ~ 1991. 2 | 현대약품(주) 중앙연구소 | 선임연구원            |
| 1990. 9 ~ 1991. 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연구원              |
| 1991. 3 ~ 1993. 2 | 경상대학교         | 교수               |
| 1994. 3 ~ 1995. 2 | 진주산업대학교       | 강사               |
| 1995. 2 ~ 현 재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 식품위생연구부<br>책임연구원 |

# 식품위생 행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문 주 석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제도
- III.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 IV. 식품위생 행정제도 발전방안
- V. 맺는말

## I. 머리말

최근 국민생활의 향상,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식생활의 개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복잡다양해지는데 식품을 둘러싼 국내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더욱 복잡하여 지고 있다.

그동안 식품위생관리는 식품의 유해물질기준은 물론 성분규격과 유통기한등 세부사항을 정부가 정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조, 유통을 금지시키는등 거의 전부분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왔으나 대외적으로 식품시장의 규모확대, 가공식품의 수요증가 및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및 수입식품에 의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

의 위생, 안전의 확보 및 공중위생의 향상,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에 대한 국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식품위생관리 업무의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행정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일단 문제가 발생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 II.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제도

### 1. 위생관리 대상

#### 가. 식품제조가공업소등

(’95. 12 현재)

총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첨가물 제 조 업	식품운반업	식품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161,809개소	40,006	194	498	120,112	201	798

## 나. 식품접객업소

(’95. 12 현재)

총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비 고
482,869개소	63,243	389,281	14,406	15,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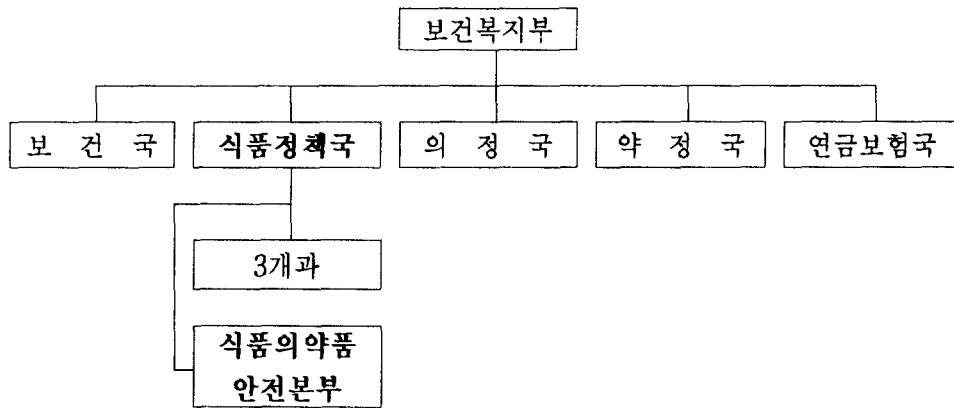
## 2. 식품위생 행정조직

### 가. 식품위생 행정조직

중앙에 보건복지부(식품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검역소(13개소)와 지방에 시·도(보건사회국), 시·군·구(사회과·위생과)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15개소)이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농림수산부, 주류는 국세청, 홍삼제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 1) 식품정책국

식품의 위생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식품국은 1996년 4월 식품정책국으로 개명하면서 행정조직의 축소·개편을 단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조직표 >

(1) 식품정책과

-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제·개정
- 식품관련단체의 관리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
- 식품위생과 관련된 지방식품의약품청의 지도·감독

(2) 식품위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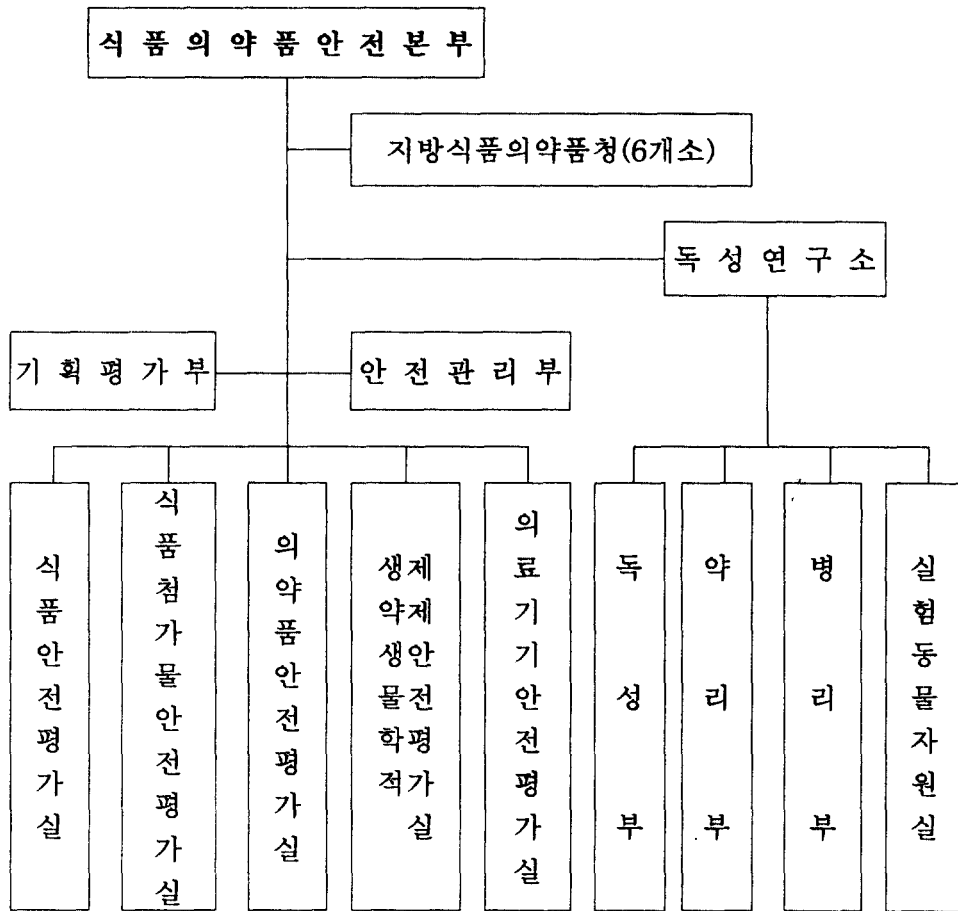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
- 식품의 국제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 유가공·육가공식품에 관한 위생관리업무

(3) 식품진흥과

- 식품의 영양 및 품질에 관한 사항
- 식품관련 산업기술 및 대외협력에 관한사항
- 수입식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수급동향 및 가격지도에 관한 사항
-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 식품위해요소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회수제도에 관한 사항

2)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권역별 지방식품의약품청을 1996년 4월 6일 출범하게 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조직표 >

가) 안전관리부

① 식품안전과

- 식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에 관한 지도 및 사후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식품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식품에 관련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약품안전과 (생략)

나) 식품안전평가실

① 식품규격과

- 식품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총괄
- 외국의 식품등에 관한 기준·규격검토 및 연구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검정
- 기타 실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식품미생물과

- 식품중의 위생미생물에 대한 검정
- 식품중의 항균성물질에 대한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③ 잔류농약과

- 식품중의 잔류농약에 대한 검정
- 식품생장조절제에 대한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 ④ 유해중금속과
    - 식품중의 유해중금속의 검정
    - 천연 독성물질의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 ⑤ 영양과
    - 식품의 영양성분 및 그 표시방법의 검토
    - 식품의 영양성분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
- 다) 식품첨가물안전평가실
- ① 합성첨가물과
    - 식품첨가물중의 합성첨가물의 검정
    - 식품중의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의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
    - 기타 실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천연첨가물과
    - 식품첨가물중의 천연첨가물의 검정
    - 착색제 및 아질산염의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
  - ③ 용기포장과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정
    - 장난감 및 위생용품의 검정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기준·규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

#### 나. 식품검사업무의 체계

국내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지방식품의약품청 (6개 지청)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및 한국식품위생연구원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동물, 식물 및 수산물에 대하여는 각각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 및 수산물검사소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 3. 식품위생 관계법규 및 처벌규정

#### 가. 식품위생법

- 1) 제55조~제59조 : 판매등 금지위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시정지시등 행정처분
- 2) 제74조~제80조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5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과태료 처분

#### 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2) 무허가제조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가격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Ⅲ.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 1. 식품위생법(법률 제5099호, 1995. 12. 29)

##### 가. 개정취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상 관리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영업자로 하여금 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9조).
- 2)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관에 의한 감시활동을 제고함(법 제20조의2).
- 3) 식품생산시마다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품목별 제조허가(신고)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함(법 제22조).
- 4)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법 제32조의2).
- 5)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회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법 제56조 및 제 56조의2).

- 6) 국민건강 위해식품등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을 300만원 내지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 2.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57호, 1996. 10. 14)

### 가. 개정취지

식품위생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제품검사대상 조정 (제3조)

가) 인삼사업법이 개정되어 홍삼제품을 모든 영업자가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품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나) 인삼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인삼과자류 및 인삼통·병조림류를 제품검사대상에서 제외

#### 2) 식품등의 재검사 (제3조의2)

가) 수입되거나 유통중인 식품등에 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는 당초 검사에 있어 그 취급 및 검사방법이 고시된 각종 규격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① 당해 영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가 특히 필요한 때(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

② 재검사 실시(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재검사결과 통보(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3)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등 (제6조의2)

가) 명예감시원의 위촉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나) 명예감시원의 업무

- ①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 의뢰
- ②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③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등

4) 편의점등의 단순조리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허가 완화 (제7조)

영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등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5) 식품군별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등 (제15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통·폐합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제조·가공하는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두도록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을 업종·규모·생산제품별로 정리

가) 1종 식품위생관리인

- ① 통조림 또는 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②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나) 1종 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

① 1종 식품위생관리인 대상식품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② 화학적 합성품외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안에서 절임식품류 또는 면류(인스턴트류 제외)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② 1종 식품위생관리인 대상식품외의 식품을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③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④ 농어민등으로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6)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방법 (제34조)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를 명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식품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

가)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나) 제품명

다)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라) 회수사유

마) 회수방법

바)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사)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식품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1996. 12. 26)

7)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제42조)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우수업소·모범업고에 대한 지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8) 과태료부과금액의 조정등 (제54조 관련 별표2)

- 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신설>
- 나)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30만원)
- 다)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30만원)
- 라)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50→100만원)·건축물 소유자(30→50만원)
- 마) 집단급식소 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50→100만원)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호, 1996. 12. 20)**

**가. 개정취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검사제도를 보완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하는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등 (제4조)

- 가) 식품위생법이 개정('95. 12. 29)되어 자가기준 및 규격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 식품등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이 예상되는 천연첨가물에 한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2) 제품검사 불합격품의 처리방법 마련 (제9조)

가) 경미한 성분규격 위반으로 불합격된 경우 재가공후 재검사 신청

나)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유독·유해물질의 검출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규격을 위반한 경우 폐기처분(법 제56조)

3) 부패과실 선별작업 개선 (제11조)

신선한 과실·채소류의 신속한 통관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썩었거나 상한 과실·채소류의 선별작업을 협소한 보세창고에서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수입판매업자가 선별·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4) 수입식품 검사절차의 개선 (제11조관련 별표6)

종래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서류·관능·정밀검사로 엄격히 구분하였으나, 서류·관능검사 대상중에서도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 개선

※ 수입식품검산지침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1996. 12. 20)

5) 출입·검사 의무규정 삭제 (제12조)

식품제조업소 및接客업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출입·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의 불편 초래

- 연 1회이상 출입·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출입·검사 실시

6)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19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조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성상·이물에 대하여 1월에 2회이상, 개별식품의 성분규격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 검사실 설치의무업소는 성상·이물에 대하여 동일 생산단위 별로 1회이상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패독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개별식품의 성분규격에 대하여 1월에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 검사횟수가 완화된 농약, 항생물질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지방식품의약품청등에서 수거·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

※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등에 대하여는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1호, 1997. 1. 4)

7) 식품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제40조 관련 별표12 및 제42조 관련 별표13)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 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함)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하여 동 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8)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 우수업소 지정 (제43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중 제조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동업소의 제품에는 “우수업소제품”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9)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제53조 관련 별표15)

가)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 유통전문판매영업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나) 영업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허가취소(과징금부과 제외)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월, 3차 2월(1차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
- 다) 사전광고심의 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 라) 위해식품 회수·공표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월, 2차 2월, 3차 3월
- 마) 우유등의 항생물질 검출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서 제외

## IV. 식품위생 행정제도 발전방안

### 1.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 가.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개편

원료→제조·가공→유통·판매→소비자보호등 일련의 과정을 계통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

- 1) 안전본부 중심의 식품안전검사, 평가, 집행의 체계화
- 2) 식품원료인 농·축·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강화
- 3) 안전본부 및 지방청에도 행정처분권한 부여

#### 나.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정비·보강

- 1) 식품검사기관의 능력제고
  - 가) 식품검사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 나)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
  - 다)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보강 지원

- 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확대 시행
    - 가)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 전과정의 위해요소 제거
    - 나) '96 식육제품, '97 어육제품, '98 유제품으로 단계적 확대
    - 다) 적용업체 시설·설비자금 용자지원(식품진흥기금)
  - 3) 신규물질의 유해성판정 기능·절차 및 정보관리 강화
    - 가) 특정물질의 유해여부의 과학적 입증자료 확보·지원
    - 나) 표준화된 검사방법 및 절차,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유해성을 발표
  - 4)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소비자보호활동 활성화
    - 가) 시·도 및 지방청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점검 및 보완
    - 나) 소비자단체 회원등 광범위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확대('96 : 1,591명)
    - 다) 식품위생감시요령, 감시방법등 전문지식 교육등으로 자질 향상
  - 5) 식품회수(Recall)제도의 정착
    - 가) 회수명령절차의 간소화로 집행의 실효성 확보
    - 나) 자진회수 중심으로 회수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
  - 6)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강화
    - 가)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사전심의 정착
    - 나)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등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 감시
- 다.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 1) 무허가등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법정최고형 유도
  - 2) 고의·상습사범에 대하여는 언론 공표
  - 3) 과징금은 행정처분 대체효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금액 상향 조정

## 2. 식품규격기준의 국제적 조화

### 가. 유해물질기준의 강화

- 1) 중금속, PCBs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등 국제수준에 접근
- 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국민보건안전측면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수준과 조화되도록 조정
- 3) 기업의 노하우에 속하는 성분규격은 자율관리토록 개선
- 4) 다양한 재료의 발달에 따른 신개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 정립

### 나. 유통기한의 자율화

- 1) 부패·변질되기 쉬운 김밥, 도시락류 등을 제외한 식품의 유통기한 자율화  
※ '96까지 346대상품목중 261개 품목 자율화실시
- 2) 유통기한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3. 기초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가. 콩나물, 간장, 고추장, 참기름등 다소비 일상식품의 신뢰구축

- 1) 콩나물 농약사용 감시강화 및 농약없이 재배되는 방안 연구 투자
- 2) 기타 일상식품의 유해요인 관리 강화

### 나. 농·수·축산물의 안전성검사 강화

- 1) 출하전 안전지도 및 안전검사 강화(농림부 협조)
- 2) 유통시장의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 4.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가. 수입식품검사 정보체계 전산화사업 마무리

수입식품의 위해물질정보, 수출국의 상황, 과거위반사례 등을 D/B화하여 위해발생가능성에 따른 자동검색체계 구축 완료

#### 나. 외국공인검사기관 지정 확대

- 1)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일부 항목을 검사에서 제외하여 편의 도모 ('96. 4월 도입)
  - \* 현재 1곳 인정(미국 Oregon주 수출서비스센터)
-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검사기관을 조사하여, 공인검사기관지정 신청을 권유

#### 다. 식품위해정보관리체계 구축

- 1) 주요 선진국의 식품위해요인 관련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등과 정보교류채널 구축
- 2)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정보축적
  - Codex 정보분석 상설작업반 운영

#### 라. 식품정보지 발간

- 1) 위해성정보, 산업정보, 수출입정보 등 취합, 정기 발간
- 2) 유관기관 및 업계에 제공, 유해식품단속등에 활용

### 5. 식품산업의 지원·육성

#### 가. 세제·금융등 지원방안 강구

- 1) 수입식품 원료의 역관세 및 전반적인 고율관세 문제의 해결
- 2) 식품산업관련 기자재나 연구개발용 시설·장비에 대한 관세 인하
- 3) 식품에 대한 세제·부담금제도의 개선
- 4) HACCP, FA, OA 자금지원제도 강구

#### 나. 가공식품의 수출증대책 마련

- 1) 품목별 수출추이를 예측하여 개별 국가별 국민의 기호, 식생활 등을 고려한 수출전략을 수립
- 2)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식품전시회 등 개최

#### 다. 식품유통구조의 개선

- 1) 냉동·냉장(Cold Chain)체제 확립
  - 가) Cold Chain 체제에 관한 현황조사 완료
  - 나) 시설개·보수비 및 장비도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 2) 수송·하역·보관 등 유통단계별 자동화, 재고관리 정보화 추진
- 3) 식품유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설비의 표준규격 설정
- 4) 냉장·냉동식품 유통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 라. 적극적·공세적 통상협상 추진

- 1) 미국과 진행중인 양자협상 통상협안의 종결
  - 가) 수입식품검사·검역제도와 식품유통기한등 현안사항은 국내 제도개선으로 해결된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종결절차 개시
- 2) 국내 수출업계의 이익을 위한 협상체계의 확립
  - 가) 수출시 상대국의 제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적극 파악, 발굴하여 대외협상 의제화
  - 나) 양자협상시 우리부가 수석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 능동적으로 협상 참여
  - 다) 복지부, 식품공업협회장, 주요 수출관련 단체장,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식품수출애로협의회 구성
- 3) 관·학·연 공동의 통상대책팀 구성·운영
  - 가) 통상문제 제기시 관련자료 및 대응방안 검토
  - 나) 외국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문제제기 자료 작성
  - 다) 아국의 수입식품관리제도, 기준규격 현황 등에 영문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 논리 개발

### 6.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 1) '96. 11월 발족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좋은식단」 보급 확대 지속 추진
  - 가) 참여대상업소를 모든 일반음식점(43만개업소)으로 확대
  - 나)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대한

## 음식물쓰레기 실태 조사 및 참여방안 강구

- 2) 결의대회, 순회교육, 포스터 및 홍보책자 제작등 고식적인 홍보 수단에서 탈피,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이용
  - 가) '좋은식단' 실천수기 공모, 자작 메뉴 컨테스트 등으로 민간의 아이디어 수집 및 분위기 고조
  - 나) Hitel, 천리안등 주요 통신망과 Internet을 활용하여,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흥미 유도
- 3) 「좋은식단」 실시 실태 점검
  - 가) '96. 2월중 시·도, 시·군·구, 안전본부 및 지방청이 참여하는 전국 일제점검 실시
  - 나) 시설 개·보수비 및 쓰레기봉투비 지원, 수도료 경감실적등을 시·도별로 정기적으로 파악, 환경보전위원회(국무총리주관)에 보고
- 4) 좋은식단 평가대회 개최
  - 가) 추진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도별로 평가
  - 나) 우수업체 대대적 포상

## V. 맺는글

최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식은 질적 위주의 식품으로 그 선호가 바뀌어 가고 있고,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 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와 더불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해양 및 하천의 중금속오염이 심화되고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약, 항생물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수와 종류도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등 식품의 위해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식품위생 행정제도의 정책방향은 식품의 안전성

강화측면에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WTO 체제출범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및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식품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식품규격기준의 국제적 조화, 기초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식품산업의 지원·육성등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품위생 행정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